##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21 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서영교·추미애·박홍배

임오경 · 박희승 · 허 영

이해식 • 윤준병 • 박균택

위성곤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"특별귀화"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. 다만,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만 "간이귀화"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.

그러나 주로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대개 현지인이거나 대한민국 언어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서의 2년 또는 1년의 주소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며,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동반취득이 매우 어려운

것이 현실임.

이에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,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7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 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 이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3항 신설). 법률 제 호

##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배우자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 공자의 직계존비속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 와 혼인한 후 7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에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간이귀화 요건) ① ~ ②	제6조(간이귀화 요건) ① ~ 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배우자가 「독립유공자예우
	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
	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고
	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
	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7년이
	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
	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
	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
	지 아니하여도 귀하허가를 받을
	<u>수 있다.</u>